

# 『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4월 3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5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5월 13일

제1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

2013년 6월 10일

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노동복지과장 정 광 배

나. 제안이유

-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 등 이용료가 2006년 6월 책정된 후 지금까지 조정되지 않아, 타지역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, 적자폭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,
- 도로명 주소사업시행에 따른, 시설위치 주소 등을 변경하는 것임.

## 다. 주요내용

-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.(안 제3조)
- 장애인 인권침해우려 표현문구 수정.(안 제12조 제2항)
- 이용료 감면대상 신설 - 의사상자.(안 제17조 제7호)
- 시설별 사용료의 조정 및 종목 신설.(안 별표)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및 근거
  - 「지방자치법」, 「도로명주소법」
  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 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입법예고 : 2013. 4. 3 ~ 4. 23(20일간)(의견없음)
- 구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.(2013. 4.26)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- 본 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 은, 제17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건으로서,
  -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수영장 등 이용료가 2006년 6월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조정되지 않아, 타 지역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, 적자폭 개선과,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.
  - 지방공공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‘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’ 의 심의(2013.03.14)를 거쳐 ‘원안 가결’ 승인된 사안으로서, 기존 요금은 전국 평균 요금 대비(수영/월회원) 85%정도이며, 2013년 7월 이후 9.7%, 2014년 7월 이후 9.2%를 인상하려는 것임.

□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,

- 시설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, 장애인 인권침해 소지 문구수정 및 이용료 감면대상에 '의사상자'를 추가하였음.
- 시설이용료는 「안 별표」 '시설사용료 신규대비표'와 같이 장소 및 사용구분에 따라 조정하였고,  
아쿠아로빅, 요가, 문화웰빙강좌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음.
- 프로그램별 '월회원' 이용료 물가인상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,

- 수영(2013년) : 일반인 10%, 청소년 9.5%, 노인·초등학생 8.6%.  
(2014년) : 일반인 9.1%, 청소년 8.7%, 노인·초등학생 10.5%.
- 헬스(2013년) : 일반인 8.6%, 청소년 10%, 노인·초등학생 10%.  
(2014년) : 일반인 10.5%, 청소년 9.1%, 노인·초등학생 9.1%.
- 에어로빅 : 2013년 10%, 2014년 9.1%, 이용시민을 일반인으로 통합.
- 탁구 : 2013년 12%, 2014년 7.1%이며,  
이용시민을 일반인으로 통합, 이용시간을 1일 2시간으로 정함.
- 신설된 프로그램 중, '아쿠아로빅'은 '수영'과 같은 이용료로,  
'요가'는 '에어로빅'과 같은 이용료로 신설 조정하였고,  
이용시민을 일반인으로 통합하였음.

- 프로그램별 '1일회원' 이용료 물가인상 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수영개인(2013년) : 일반인 10%, 청소년 8.0%, 노인·초등학생 15%.  
(2014년) : 일반인 6.1%, 청소년 11.1%, 노인·초등학생 8.7%.
- 수영단체(2013년) : 일반인 12%, 청소년 15%, 노인·초등학생 20%.  
(2014년) : 일반인 7.1%, 청소년 8.7%, 노인·초등학생 11.1%.
- 탁구 : 2013년 15%, 2014년 8.7%이며,  
이용시민을 일반인으로 통합, 이용시간을 1일 2시간으로 정함.

○ 그리고,

시설이용료 인상부분이 비록 심의에서 승인된 사항이라 하더라도, 일시에 인상되는 만큼, 서비스 개선 및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.

#### □ 검토결과

○ 위와 같이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, 조례안이 일부 개정되어 있으므로,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     략

5. 토    론    요    지 : 생     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     음

7. 심    사    결    과 : 원안가결